

캠핑장 안전사고 ‘대비 행동 매뉴얼’의 체계화 방안

이주욱¹, 김윤상¹, 한동수^{2*}

¹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²대전태평중학교

Systematic Measure of The Safety Accidents ‘Preparation Behavior Manual’ in Campground

Joo-Wook Yi¹, Yun-Sang Kim¹, Dong-Soo Han^{2*}

¹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aejeon Taepyeong Middle School

요 약 본 연구는 캠핑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캠핑장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검토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등록기준 개선의 요소를 제시했다. 결국 ‘대비 행동 매뉴얼’의 체계화를 위해 예방 행동 매뉴얼과 대응 행동 매뉴얼의 일부를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사고 예방 행동 매뉴얼의 예는 첫째, 질식, 둘째, 교통사고, 셋째, 화재, 넷째, 전기사고로 구분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별 이니셜로 “S.A.F.E.”라는 구체적 행동 매뉴얼의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행동과 대응 행동의 매뉴얼을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숙지했다는 확인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후속연구로는 캠핑장 안전과 관련된 사례연구, 안전 관리 지표 개선, 캠핑장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했다.

주제어 : 캠핑장, 안전사고, ‘대비 행동 매뉴얼’, 대응, 예방

Abstract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manual for the safety accidents in campsite. For this, analyzing the types of safety accidents and reviewing the regulations of campsite.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 problem was diagnosed and the elements of improvement were presented. Eventually, part of the Responsive and Preventative Behavior manuals were developed to organize ‘Preparation Behavior Manual’. Especially, examples of safety accident prevention behavior manual were divided into: 1st, suffocation, 2nd, traffic accident, 3rd, fire, 4th, and electrical accident. “S.A.F.E.”, An example, was created with the accident specific initials that were more frequently caused.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cess of understood by the user. Subsequent studies recommended the study of cases,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ndicators, and the specialization of campground manager and safety guard.

Key Words : Campground, Campsite, Safety Accident, Preparation Behavior Manual, Action, Prevention

1. 서론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캠핑의 인구가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

으로 1,200여 개의 등록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 캠핑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한다.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camping)[1]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캠핑 시설은 1,973개소로 보고하고 있다. 2016년 “관계부처 합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6.

*Corresponding Author : Dong-Soo Han(gugudak@naver.com)

Received January 3,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등, 야영장¹⁾ 등록 활성화 추진에 따라 캠핑장 등록을 독려하고,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는 곳과 등록이 불가능한 곳들을 제외하고 1,872개소로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2016)에 따르면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소재의 캠핑장이 600개소로 17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도 367개소, 경상북도 210개소, 충청남도 165개소, 경상남도 144개소 순이다[3].

Table 1. Status of National Camping Sites[1]

(unit: place)

Basic Date	Total	Registration	Non-registered		
			Able to register	Unable to register	Voluntary closure
End of April	1,844 (100%)	1,203 (65.3%)	297 (16.1%)	312 (16.9%)	32 (1.7%)
End of May	1,917 (100%)	1,251 (65.3%)	400 (20.8%)	224 (11.7%)	42 (2.2%)
End of June	1,872 (100%)	1,345 (71.8%)	527 (28.2%)		

한편, 캠핑 인구와 캠핑 시설의 증가에 비교해 안전 기준 등 법률 제정이 시대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2]. 이에 캠핑장 안전대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주요 안전사고의 예는 2015년 2월 전북 고창 텐트 내 부부 질식사고, 3월에 인천 강화도 글램핑²⁾장 텐트 화재 발생으로 성인 2명, 어린이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밀폐된 텐트 안의 발열매트 과열로 밝혀졌다. 2015년 6월에는 전북 무주군의 캠핑장에서 일가족 4명이 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5부 1처 1청(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산림청)에서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3].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및 법제화, 둘째, 야영장 안전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넷째,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다섯째, 관리자 안전의식 재고 및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 정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 야영장은 캠핑장을 포괄하는 법적 용어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공원법 등 수련시설과 일반·자동차 야영시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자동차 야영시설에 한정해서 ‘캠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 글램핑은 화려하다(Glamorous)는 것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카라반이나 캠핑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이다 [2].

박소순·오금호[4]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과 조치, 관리·감독 등 캠핑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최지훈·최돈묵[5] 역시 최근 캠핑형태인 글램핑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일광·권혜원·최진호[6]는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2016년 6월 17일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TF”를 통해 “야영장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내용은 야영장 통합 안전 기준을 만들고, 글램핑, 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 차단기 설치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관리 기준 마련,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 야영문화 확산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7]. 이는 정부 차원의 안전 기준 및 법적 제도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용래 의원은 최근 5년간 캠핑장 안전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례를 들었다[8]. 이에 캠핑장 안전시설 설치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등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및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캠핑장 안전관리대책의 수단으로 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2015년 2월에 일부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9조의 내용을 부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항에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2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9]. 캠핑장 등급 결정의 근거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10]. 우리나라의 경우 캠핑장 등급과 관련하여 위생시설, 편의시설이 중심이 아닌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한 등급제가 요구된다[5].

지금까지 캠핑인구 및 캠핑장의 증가, 사고사례, 캠핑장 안전관련 기준 및 법안, 캠핑장 등급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10년 이상 야외교육(outdoor education) 및 캠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자(Camper) 입장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전의식 수준에 비해 안전 실천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준과 법안이 있어도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쉽

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설을 기준으로 캠핑장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안전 기반이 확립된 이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캠핑은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매뉴얼은 각 부처에서 개발한 정책, 점검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예방과 대응 행동을 위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대비 행동 매뉴얼’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캠핑장 안전과 관련된 이론을 분석하고, 안전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개발된 “캠핑장 이용자 안전수칙”을 평가하고, 행동 매뉴얼³⁾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보고서와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캠핑장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을 검토했다.

2.1 안전사고의 유형 분석

Table 2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캠핑장에서의 위험요인이다[12].

공통 위험요인 중 ‘전기’, ‘화재’, ‘질식’의 경우는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6년간 안전사고 유형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시설’, ‘위생’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아니다. ‘교통’은 캠핑장 내 서행을 강제하는 법규가 필요하다. 기타 사항으로 추락, 응급환자, 곤충에 의한 위험 예방은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용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해야 한다.

Table 2. Predictable dangerous factor in the camping grounds[12]

Common dangerous factor		
Part of safety controllable	Electronic	electric shock, electrical short, overload
	Fire	brazier, stove, cigarette, spark, campfire
	suffocation	gas suffocation in tent, poisoning
	Traffic	child accident in auto campground
	Facilities	cancer-causing flooring
	sanitation	infectious disease, food poisoning, trash, sanitation of dining room
etc.	falling, emergency patient, insect	
Dangerous factors of location type		
Necessary to secure safe facilities	Mountain	Landslide, sorts of snad, Poisonous insect forest fires, places infested by wild animal
	River, Valley	Flooding, sorts of snad, electrical short
	Sea	damaged by abnormal wave, tsunami

2.2 캠핑장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 검토

캠핑장 형태에 따른 관련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야영장 운영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야영장 규정은 이 연구의 캠핑과 다른 개념이어서 삭제하고 Table 3을 재구성하였다.

Table 3. Relevant statutes and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campground[12]

Relevant statutes	Main contents	Departments
The promotion law of tourism	· Tourist facilities business · Regulation on ‘General · Car Camping Busines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law of natural park	· Park Facility · Regulations on ‘Campground’	Ministry of Environment
The law about Forest culture	· Natural recreational forest facilities · Regulations on ‘Campground’ / ‘Forest Campground’	Korea Forest Service

캠핑장 형태에 따라 소관부서와 관련 법령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캠핑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지속하는 것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야영장의 안전 기준 중, 화재 예방기준의 주요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의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별표 7) “전기용품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사용할 수 있

3) ‘대비 행동 매뉴얼’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수칙과 매뉴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등이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위생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영·김송이[13]는 여러 부처에서 야영장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캠핑장 관계법에서 재난·사고 유형별 위험성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4]. 결국 사용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전 법규와 안전사고 유형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3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관련 연구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기준과 관계법령은 개정되고 있다. 반면에 사용자 차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의 체계화와 개발은 미흡하다. 다만, 야영장의 안전 수칙, 법 개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와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개발하고 있다[14]. 이 매뉴얼은 산불에 대한 대응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일련의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Fig. 1처럼 조직화한 긴급구조 통제단의 구성을 캠핑장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요한 것은 ‘관(官)’차원의 행동 매뉴얼은 재난 시 캠핑장 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재난 시 대응단계를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하고 있다. 태풍, 호우재난 위기경보를 상황에 따라 순차와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할 수 있게 대응단계를 구분한 것이다[15]. 캠핑장에서도 관리자와 안전요원은 각 단계별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자는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책무와 역할을 인지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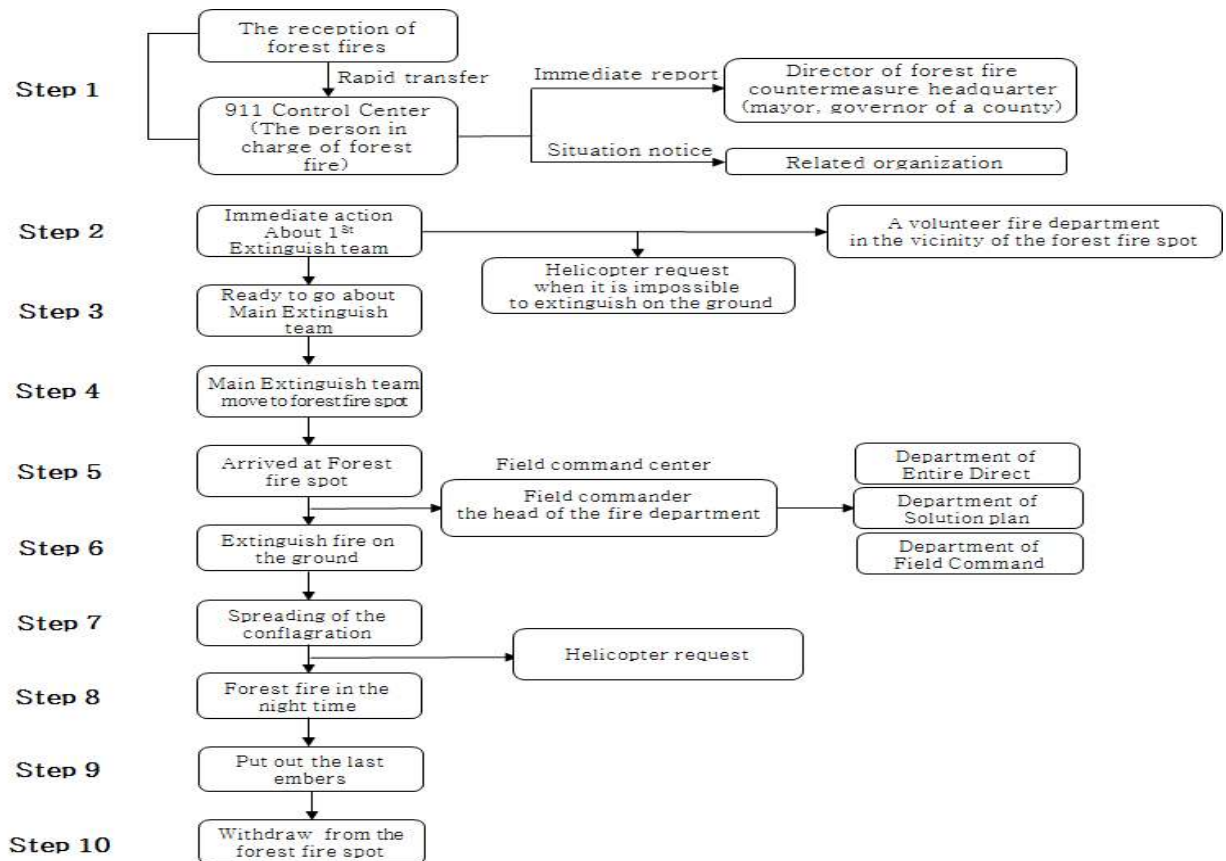


Fig. 1. The overall system in Korea about forest fire extinguishment[14]

3. 캠핑장 안전 기준의 문제점 진단

3.1 화재 대응 행동 매뉴얼의 구체화

지금까지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기준, 관계법령, 재난 행동 매뉴얼을 분석했다. 화재는 캠핑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이므로 중요하게 대비해야 한다.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사고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Fig. 2는 강화도 글램핑 캠핑장 사고의 사례다.



Fig. 2. Case concerning the accident of the Glamping Camper in Ganghwado[16]

새벽 2시 10분경 인천시 강화도 글램핑 텐트에서 냉장고, TV, 발열매트 리드선 부근 누전(추정)으로 발화 3분 만에 텐트가 전소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캠핑장의 화재사고는 짧은 시간에 전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사례는 캠핑장의 소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소했다.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은 부족했다. 이후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소화기 비치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캠핑장에 비치하는 소화기뿐 아니라 개인용 소화기가 필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불어 텐트 내 사용되는 전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권고가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도한 전기시설을 갖춘 글램핑 설치 금지해야 한다. 결국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해서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

3.2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세분화 및 행동 매뉴얼에 반영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 물론 ‘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행령 또는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게시할 것’은 실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시 행동 요령을 ‘대비 행동 매뉴얼’로 체계화하고 사용자에게 교육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의 규정이다. 이미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용 소화기’를 필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텐트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배치된 소화기로는 화재에 대응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텐트를 찢고 나올 수 있는 휴대용 칼이나 날카로운 것을 배치하는 것도 ‘대비 행동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이라는 규정이다. 여기서 대피소는 재난발생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가 10여 년간 야외교육 현장과 캠핑장을 방문하면서 ‘대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드물었다. 태풍이나 호우 특보 등 주요 재난이 발효되면 대피할 수 장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텐트 내에 있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면, 캠핑장에서 적합한 장소는 ‘취사장’이다. 캠핑장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식수와 기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사장’과 ‘사무실’ 또는 기타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 보수하고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관리요원 확보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자격기준이나 안전교육 이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경우처럼[17]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개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속 야영장’[18]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과 관련해서, 편의·위생 설치기준에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안전과 인권차원

에서 모든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캠핑장에서 비상시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확인하는 과정, 소화기의 배치와 개인 소화기 필수화, 대피소 확보, 관리요원 확보, 장애인 이용은 등록기준에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권고가 아닌 필수사항으로 제정(制定)을 검토해야 한다.

4. 행동 매뉴얼 체계화를 위한 조건

4.1 캠핑관련 안전 기준 개선

본 절에서는 안전사고 '대비 행동 매뉴얼' 체계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야영지 규모를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오토캠핑이 대부분인 시설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74제곱미터가 권고되며, 독일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포함할 경우 120제곱미터의 기준을 권고한다[19].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Accessible)을 강조하고, 테이블의 소재, 그릴의 위치, 건물별 소재 등까지 자세하게 규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캠핑 사이트 규모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설 캠핑장을 ‘난민 수용소’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로 사이트 간격이 좁다. 이것은 안전사고 대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이트 간격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무리하게 개발할 경우, 산사태나 기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화재나 집중호우, 해일,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피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대피소는 캠핑장 규모를 고려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수도와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3절에서 언급했던 취사장을 이용한다면 선진국에도 갖추어지지 않은 안전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 안전 수칙의 체계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야영장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있다[20].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 천막 안에서 화재, 질식의 원인이 되는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으로 총 사용량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사용 가능), 둘째, 강풍 시 텐트 폴대나 팩이 빠지면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단단히 박아 고정시킨다. 셋째,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시 주의한다. 넷째, 취사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끄고 숯불 등의 잔불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흡연은 반드시 흡연구역에서 하고, 담뱃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한다. 여섯째, 액화석유가스는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만 야영장에 반입할 수 있고,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한다. 일곱째,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므로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 사용을 자제한다. 여덟째, 보행 중 천막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아홉째, 긴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대피로와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다. 열째, 태풍,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등 야영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안전 수칙의 전문을 제시한 이유는 기술(description)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첫째, 문장이 간결하지 않고, 길어서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둘째, 캠핑장 사망사고로 자주 발생하는 텐트 내 숯불 및 갈탄 사용 금지, 서행운전, 전기 과부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셋째, 예방 수칙과 대응 수칙이 혼재되어 있다. 넷째, 대응 수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대비 행동 매뉴얼’로 재구성해야 한다.

4.3 안전교육 개선 및 안전 점검 강화

관광진흥법 제20조의 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 의미를 시행하고 있다. 목적은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5시간 안전교육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Table 4와 같다.

Camp ground 'S.A.F.E.'

- Possession of Individual fire extinguisher.
- Pre-Check a place of fire extinguisher.
- Pre-Check a location of shelter.





	Suff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Not Using charcoal in tent. • Make a vent in tent.
	A traffic acc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ve slowly(10km/h or less). • Do Not drink-driving.
	F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t out embers(Brazier, cigarette, mosquito coils, etc.). • Check a radiator. • Used only Under 13kg of Gas cylinder.
	Electr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d only Under 600W. Ex) Hair drier: 1100W • Please stretch lead wire. • Check an overcurrent.

Fig. 3. Ex. Behavior Manual to Prevent Safety Accident

Table 4. Reconstitution of training schedules[22]

Time	Contents of Education	Notes
9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s relating to campgrounds and case of safety accidents - Explain about regulations relating to campgrounds - Introduction to the main safety accidents - QnA 	Presentatio n dat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2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Plan in Case of Emergency - How to manage and use fire extinguishers - Know-how about First ai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tc.) 	Including Practice (Fire fighting school)
6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al evaluation 	Survey

안전교육 내용을 보면 관계법규 설명과 안전사고 사례, 소화기 관리 및 사용 요령, 응급처치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교육 내용은 필수이지만 안점 점검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필요하다. 또한, 안전을 위해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한다[21]. 안점점검 강화를 위해서 제언을 하면 첫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체 점검 및 진단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 안전 교육이다. 둘째, 캠핑장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는 규정을 고려해서 심폐소

생술과 수상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캠핑장 내 안전요원과 지역의 전문 인력이 합동해서 자체점검, 정밀 안전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자동제세동기를 의무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캠핑의 본질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용자는 캠핑 안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캠핑장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대비 행동 매뉴얼'의 체계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캠핑장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검토했다. 산림청의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을 통해 관(官)차원의 조직화된 구조 매뉴얼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화재 대응 행동 매뉴얼의 구체화와 등록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기술했다.

문제점 진단 후에 '대비 행동 매뉴얼' 체계화를 위한 조건으로 안전 기준의 개선과 안전 수칙의 체계화를 제시했다. 결론은 대비 행동 매뉴얼의 체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매뉴얼의 일부를 개발했다. "캠핑은 안전"에 착

안해서 “S.A.F.E”라는 구체적인 지향성을 표방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방 행동과 대응 행동을 구분하여 ‘대비 행동 매뉴얼’ 안(案)을 제시했다.

대응 행동 매뉴얼은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화재 사고의 예로 만들었다. “첫째, 주위에 도움을 요청, 개별 소화기로 조치. 둘째, 진압이 어려울 때 신속히 칼로 텐트를 찢고 밖으로 나옴. 셋째,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사용자의 화재 시 대응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 안전사고별 대응 행동 수칙들을 집대성해서 ‘대비 행동 매뉴얼’을 구성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행동 매뉴얼(안)은 Fig. 3과 같이 질식(Suffocation), 교통사고(A traffic accident), 화재(Fire), 전기사고(Electric)로 구분했다. 위험 빈도가 높은 사고별 이니셜(initial)로 “S.A.F.E.”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소화기를 소지하고, 소화기 위치와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방 차원의 행동 매뉴얼로는 ‘질식’에서 텐트 내의 숯불 금지, 환기구 확보, ‘교통사고’에서는 서행과 음주운전 금지, ‘화재’는 화로, 담배, 모기향 등 불씨 제거와 난방기기 점검, 가스통 13킬로그램 이하, ‘전기’는 600와트 이하의 기구 사용과 구체적인 예시로 헤어드라이기가 1100와트라는 것을 일반인 입장에서 표시했다. 특히, 전기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리드선⁴⁾은 감겨있을 경우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행동과 대응 행동의 매뉴얼은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숙지했다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매뉴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들을 나열하거나, 서술형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단어(Cue)를 중심으로 체계화해서 개발해야 한다. 후속 연구로는 첫째, 행동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용자 면담과 텔파이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연구, 둘째, 캠핑장 안전평가 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관리자와 안전요원의 전문성 요소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6). *Status of camping grounds in Korea and tourist camps*. <http://www.gocamping.or.kr>
- [2] J. W. Yi, J. U. Ko, D. H. Kim, J. M. Jang & D. S. Han. (2017). Explo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rientation of Family Camping.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8(1), 339-363. DOI : 10.18612/cnujes.2017.38.1.339
- [3] S. J. Lee & K. C. Park. (2016). *Is it necessary to introduce more grading system for camping grounds?.* Gyeonggi-do :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4] S. S. Park & K. H. Oh.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Direction for Safe Camping Ground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5(4), 25-35. DOI : 10.12812/ksms.2013.15.4.25
- [5] J. H. Choi & D. M. Choi (2016).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of Camping Ground Fir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18(1), 57-64. DOI : 10.12812/ksms.2016.18.1.57
- [6] I. G. Kim, H. W. Kwon & J. H. Choi. (2016). Safety Management Network of Sports Facilities Abroad and System Stat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547-562. DOI : 10.14400/JDC.2016.14.6.547
-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Clear out the blind spot of safety by setting the integrated safety standard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8] D. Y. Lee. (2017. 10. 26.) ‘Caution about safety Accident in Campground.’ “ 29 Deaths in the past 5 years”. Yonhap News. <http://www.yonhapnews.co.kr>
- [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7. 18.). *Law of Tourism Promotion*. <http://www.law.go.kr/main.html>
- [10] S. J. Lee. (2016). *Suggestions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Campground Grading*. Gyeonggi-do :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11] S. Y. Kim. (2015).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279-289. DOI : 10.14400/JDC.2015.13.2.279
- [12]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Direction for Safe Camping Ground Activities*. Ulsan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 [13] Y. Y. Kim & S. Y. Kim. (2015). *Counter Plan about*

4) 단자와 단자 사이를 이어주는 전선이다.

management of Campground. Seoul : Korean Culture & Tourism Institute.

- [14] J. G. Bae & S. Y. Lee. (2012). Systematization of the Forest Fire's Early Extinguishment Manual: Focused on firefighters at the 119 Safety Center in Gyeongsangbuk-do.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8(1), 231-246.
- [15] Korea Forest Service. (2017). *Regulations of Campground in the Forest as a Community Facility for Natural Recreation Forest*. Daejeon : Korea Forest Service.
- [16] J. G. Kang & H. G. Son. (2015. 3. 22.). *Fire at Kanghwa-do Campsite.....Two families were injured or passed away*. Yonhap News. <http://www.yonhapnews.co.kr>
- [17]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Reclamation (2017). *Recreation Facility Design Guidelines*. Denver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Reclamation
- [18]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7). *System and Status on the Campground in the Forest*. Seoul :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1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 Study on the Vitalizations of Campground Leisure*.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Campgrounds User's Safety Rule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1] Y. M. Kim. (2017). The Study on Local Government's Disaster Safety Governance using Big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61-67.
DOI : 10.14400/JDC.2017.15.1.61
- [2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5.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vide the first campsite business operator safety training*. <http://www.mcst.go.kr/>

이 주 옥(Yi, Joo Wook)

[정회원]



- 2002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야외교육, 캠핑, 질적 연구
- E-Mail : joowookyi@cnu.ac.kr

김 윤 상(Kim, Yun Sang)

[학생회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2014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학교체육, RC, 질적 연구
- E-Mail : 8811p@naver.com

한 동 수(Han, Dong Soo)

[정회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전태평중학교 교사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체육정책, 스포츠클럽, 질적 연구
- E-Mail : gugudak@naver.com